

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공사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나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다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- 다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
		위반	위반	위반	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0조제2항제1호	허가 취소			
나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1) 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포트를 개발한 경우 2)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조제2항제2호	원상 회복 공사 중지 30일	공사 중지 60일	공사 중지 90일	허가 취소
다.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10조제2항제3호	허가 취소			
라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	법 제10조제2항제4호	공사 중지 30일	공사 중지 60일	공사 중지 90일	허가 취소